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58
----------	------

2025년 4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31일, 봉양순 의원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일
다. 상정일자: 제33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봉양순 의원)

- 가. 제안이유
-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세탁소 등)에 관한 규제 조항을 권고로 완화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교육·홍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 지원 규정을 명시(안 제20조).
-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권고로 완화하여 수정(안 제21조).
- 대기환경개선 관련 교육·홍보 및 표창 규정을 신설(안 제22조,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귀수)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관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교육·홍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20조는 「대기환경보전법」²⁾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자동차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규모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세탁업, 인쇄업, 도장업 등 생활환경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유해 대기오염물질로서 초미세먼지(PM_{2.5})와 오존(O₃) 생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신경계, 호흡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함.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집행률 저조 및 국비 미편성³⁾ 등을 사유로 올해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음.

이에 대해 서울연구원 등은 서울시 산업 구조상 소규모(4·5종) 대기배출시설이 산재해 있고 특히 자동차 도장시설은 도심 내 밀집 주거지역에 있어 민원이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상온과 상압에서 대기 중에 가스 형태로 배출되는 탄화수소류 가운데 석유 화학 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을 이르는 말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별표 3과 같다.

25) 도장시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3) 국비 미편성 사유: 지출구조조정 사업 대상(2019년 지원 이후 6년 경과, 집행률 매년 60% 수준)에 따른 사업축소

가중되고 있는 등 방지사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지원사업의 방향을 시설 설치 지원에서 유지관리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음.

따라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인체 유해성 및 서울시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사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24.12월 기준)>

계(개소)	1 종 (80톤 이상)	2 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3 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4 종 (2톤 이상 10톤 미만)	5 종 (2톤 미만)
2,389	17 (0.71%)	12 (0.50%)	21 (0.88%)	786 (32.9%)	1,553 (65.0%)

- 동 조례 제20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⁴⁾에 따라 시장이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방지사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실제 방지사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이 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을 고려하여 실효성 없는 방지사설 설치 명령보다는 자발적 설치를 권고(유인)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대기질 관리에 유리하므로 안 제21조와 같이 방지사설 설치 ‘명령’ 규정을 ‘권고’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

- 안 제22조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23조는 대기환경개선에 공적을 세운 개인,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표창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견 없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대기환경개선 활동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시·도지사는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사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및 지원”을 “취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배출원 관리 및 지원”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도장시설 관리 및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령”을 “권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의 제목 “(소규모 배출원 규제)”를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리)”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교육 및 홍보 지원 등) 시장은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기환경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
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제품의 사용 활성화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표창) 시장은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장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및 지원</u> <u><신 설></u> <u>제20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시장</u>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 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 령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제4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배출원 관리 및 지원</u> <u>제20조(도장시설 관리 및 지원) 시</u> <u>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u> <u>칙」 제5조에 따른 도장시설을 운</u> <u>영하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방지</u> <u>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u> <u>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제21조(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u> <u>리) ①</u> ----- ----- ----- ----- 권고----- -----. 1. ~ 3. (현행과 같음) <u>② 시장은 제20조제1항제2호 및</u> <u>제3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에 개</u> <u>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u> <u>수시설 또는 방지사설을 설치하는</u> <u>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u> <u>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제22조(교육 및 홍보 지원 등) 시장</u> <u>은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u> <u>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u> <u>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u>

제21조(소규모 배출원 지원) 시장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
규모 배출원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수시설 또는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기환경개선 관련 교육 및 홍
보

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제품의 사용 활성화 교육 및 홍
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삭 제>

제23조(표창) 시장은 대기환경개선
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
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
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